

인천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3가단2103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응원

담당변호사 안성진

피고A

변론 종결2024. 9. 11.

판결 선고2024. 11. 20.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B와 피고 사이에 2021. 5. 25. 체결된 149,750,000원의 증여계약을 81,493,5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1,493,5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5. 10. 21. C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B와 사이에, B가 D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원리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B가 대위변제금 및 그 지연손해금,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증기간 '2020. 10. 16.까지', 보증원금 한도액 '90,000,000원'으로 된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를 발급받았다.

나. B의 대출

B는 2015. 10. 21.경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D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보증금액 90,000,000원).

다. B의 대출금 연체와 원고의 대위변제

1) B가 2020. 9.경 C을 폐업하고 D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는 2020. 10. 30.경 D은행에 B의 잔여 대출금 채무 81,493,54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B의 파산 및 면책 사건이 경과

1) B는 2020. 10. 7. 인천지방법원 2020하단3004(2020하면3004)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2021. 7. 23.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파산/면책 사건'이라 한다).

2) B는 2022. 2. 10.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아, 그 무렵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되었다. 면책불허가 결정의 이유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이 요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명의의 생존자보험가입내역조회에 기재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환급금증명서와 위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납부된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설명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 및 그 중대성,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면책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채무자에 대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1) 2021. 7. 20. 속초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1.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B의 자녀(H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는 I이고, 위 매매의 거래가액은 257,000,000원으로 신고되었고, 2021. 7. 20.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28,7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 자금은 약 149,750,000원(= 매매 대금 257,000,000원 - 피담보채무 107,250,000원)인데, 피고는 만 30세로서 스스로 매수자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었다.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파산/면책 사건에서 B에게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에 대하여 설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경위, 매수자금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았고, B에 대하여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면책불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B는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149,750,000원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해당 금액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따라서 B의 피고에 대한 149,750,000원의 증여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그 중 원고의 구상금 채권액 81,493,545원에 대하여 그 취소와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1) 법리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대상은 채무자가 한 '법률행위'이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볼 것이지만, 원고는 적어도 채무자가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B의 자녀인 피고가 만 30세로서 매수자금을 마련할 자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149,750,000원을 B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고 있을 뿐, B가 피고에게 149,75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파산/면책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이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자금에 대하여 설명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B가 이를 거부하여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으므로 B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B가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단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면책불허가 결정의 이유를 보면, B가 면책불허가를 받은 이유는 보험환급금과 보험계약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파산관재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또는 설명의무에 관한 것이 아닌바, 원고의 주장은 사실과도 다른 점, ④ 피고는 현재 K에 재직하여 월 293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고, 피고가 상당기간 근로 활동을 하고 투자 등을 통하여 상당 금액의 수익을 얻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피고는 결혼하면서 처갓집의 지원과 퇴직금 등으로 L의 주택을 매수하고, 주택 매도 후 얻은 시세차익 6,000만 원과 그동안 모은 돈 8,000만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마련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피고에게 149,750,000원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진원